

대구광역시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군이 설치하는 달성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 “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라 함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종합유통센터의 명칭등) 종합유통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면 적 (m ²)	
		대 지	건 물
달성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5번지 등	40,867	21,825

제4조(취급품목)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 (개장일 및 운영시간)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

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종합유통센터의 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이상 10년이내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종합유통센터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위탁신청) ① 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기타 종합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당해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자금 확보)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익월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비치)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장 종합유통센터의 운영

제12조(운영) ①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

지의 다양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강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 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①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목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제14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군민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유지·활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개발, 자금지원 등 산지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종합유통센터의 시설

제18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운영주체는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위탁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전대금지)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0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대집행)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휴·폐업 허가) 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대행)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등) ①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주체로 선정된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한 운영주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주체가 부담 설치한 인테리어, 전기, 통신, 설비(냉동·냉장)시설 등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국고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년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물류장비는 운영 주체변경시 무상전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종합유통센터명			
	위 치			
	취급 품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농수산물종합 유통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달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지정서			
종합유통센터명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취급품목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간)
	년 월 일	부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달성농수산물종합 유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위탁 휴업승인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휴 업 기 간	휴 업 사 유	휴업 공시 방법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달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달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위탁 폐업허가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폐업일자	폐업사유	폐업공시방법		
달성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달성군수귀하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기간: . . . ~ . . .)

회원번호 (등록번호)	성 명	거래실적	미 수 금 결제금액	미수금 잔 액	담보금액

【별지 제6호서식】

거래 실적 보고서

종합유통센터 운영자명:

년 월 일

부 류	품 목	거래실적(당일)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합 계					
과 실 류	사과					
	배					
	복숭아					
	바나나					
	포도					
	감귤					
	단감					
	밤					
	자두					
	잣					
	대추					
	살구					
	은행					
	곶감					
	떫은감					
	호두					
	모과					
	유자					
	석류					
	무화과					
	앵두					
	자몽					
	레몬					

부 류	품 목	거래실적(당일)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과 실 류	키 위					
	파인애플					
	기타과실류					
	소 계					
채 소 류	수 박					
	참 외					
	토마토					
	메 론					
	딸 기					
	오 이					
	호 박					
	풋고추					
	당 근					
	양 파					
	상 치					
	물고추					
	가 지					
	완 두					
	풋 콩					
류	풋옥수수					
	샐러리					
	피 망					
	양상치					
	시금치					
	쑥갓					
	미나리					
	깻 잎					

부 류	품 목	거래실적(당일)		거래실적(누계)		비 고
		물량 (M/T)	금액 (천원)	물량 (M/T)	금액 (천원)	
채 소 류	부록코리					
	루비볼					
	칼리홀라워					
	파세리					
	무					
	배 추					
	기타채소류					
서 류	감자					
	고구마					
	기타서류					
	소 계					
버 섯 류	느타리					
	표고					
	양송이					
	기타버섯류					
	소 계					
기 타 부 류	소 계					